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64 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:허성무·권향엽·주철현

정진욱 • 조계원 • 김남근

이기헌 · 허 영 · 김문수

박희승 • 박지원 • 윤건영

윤종오 · 김 윤 · 이광희

이병진 • 김동아 • 박선원

오세희 의원(19인)

제안이유

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·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(well-dying)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, 다수의 노인 등은 정든 집이 아닌 요양원,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음.

최근 재가 임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주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대통령령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 입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규정함(안 제66조의2제2항).
- 나. 행정기관의 장은 연 60일 이내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6조의2제3항).
- 다.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특별히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필 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하도록 함(안 제66조의2제4항).
- 라. 경조사휴가, 출산휴가, 재해구호휴가,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, 난 임치료시술휴가, 포상휴가, 가족돌봄휴가, 임신검진휴가 및 심리안 정휴가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하여 규정함(안 제66조의2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4항까지).
- 마.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한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(안 제66조의2제6항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6조의2(휴가)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(年暇), 병가, 공가(公暇)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

- ②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 3일을 더한다.
- 1. 1개월 이상 1년 미만: 11일
- 2. 1년 이상 3년 미만: 15일
- 3. 3년 이상 4년 미만: 16일
- 4. 4년 이상 5년 미만: 17일
- 5. 5년 이상 6년 미만: 20일
- 6. 6년 이상: 21일
- ③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.
-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

- 근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 인하여야 한다.
- 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- 1. 본인의 결혼: 5일
- 2. 자녀의 결혼: 1일
- 3. 배우자의 출산: 2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25일)
- 4. 입양: 20일
- 5.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: 5일
- 6.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의 사망: 3일
- 7.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: 3일
- 8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: 3일
- 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-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인사혁신 처장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, 출산

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신 중인 공무원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

- ⑧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 [배우자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(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)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.
- ⑨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일 이내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.

- ①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, 진료 및 휴식을 위한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제 정 안 제66조의2(휴가) ① 공무원의 휴 가는 연가(年暇), 병가, 공가(公 暇)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 ②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력 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이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 3일을 더한다. 1. 1개월 이상 1년 미만: 11일 2. 1년 이상 3년 미만: 15일 3. 3년 이상 4년 미만: 16일 4. 4년 이상 5년 미만: 17일 5. 5년 이상 6년 미만: 20일 6. 6년 이상: 21일 ③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60 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.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
	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이

- 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 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. 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 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 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 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조사휴가를 주 어야 한다.
- 1. 본인의 결혼: 5일
- 2. 자녀의 결혼: 1일
- 3. 배우자의 출산: 2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경우에는 25일)
- 4. 입양: 20일
- 5.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: 5일
- 6.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 외조부모의 사망: 3일
- 7.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: 3일
- 8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의 사망: 3일
- 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 원이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 한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 모,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

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 등 임 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⑦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(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미숙 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 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에는 60일)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. 다만, 임신 중인 공 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

⑧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으로 피해[배우자, 부모(배우자 의 부모를 포함한다) 또는 자 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. 이 하 이 항에서 같다]를 입은 공 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 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

5일(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)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⑨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 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 으며,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 기 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 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일 이내의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

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.

①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 인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①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10일의 범위에 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,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.